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0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590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A 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구합50887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2. 11.
판 결 선 고	2019. 1. 15.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05

피고가 2014. 11. 7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8,351,080원, 지방교육세 11,835,100원, 농어촌특별세 5,917,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3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.

【 바.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.】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).

직권으로 살피건대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05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.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,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